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제 377 호

1973.6.15

시보

차 례

영문본문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간행하였음.

1973. 6. 15.

서울특별시 시민과강

◎ 조 례

제 772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3

제 773호 서울특별시사회정화실천위원회조례폐지
에 관한 조례 3

제 774호 서울특별시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

제 775호 서울특별시척추상이용사 소유토지전환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조례 4

제 776호 서울특별시 구, 동파탈장병지원 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한조례 5

고 시

제 90호 도시계획시장시설결정 및 시장시설위치
변경과 지적승인 5

◎ 식량증산결전의해 증산시책에 대하여 7

◎ 제 2회 간호보조원 자격시험합격자 명단 8

◎ 사 령 1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교육연구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서울특별시 장 양 택식

에 공포한다.

1973년 6월 14 일

1973. 6. 1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생

◎서울특별시조례 제 773 호

서울특별시사회정화실천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772 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제정 1969. 1. 16 조례제 567 호)

개정 1973. 6. 13 조례제 772 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중 " 행정 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를 " 지방행정 사무관 "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자
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양 택식

1973년 6월 14 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74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제 283 호 (1963.1.10)

서울특별시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무총리의 승인을얻어 제정 한 서울특별
시적추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 및 자
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양 택식

197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조례제 775 호

서울특별시적추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
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군사원호 보

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492의 84 소재 재환용사촌에 집단
거주하는 척추상이용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전조의 척추상이용
사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과 보철용
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시세를 면제한다

1.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2. 자동차세
3. 면허세

제3조 (사무처리의위임) 전조의 규정
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사무는 당
해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처리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동조 각호의 시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세목 및 파세면제 대상 물건의 명세를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 급별 증명서를 면제 받을 세목의 납기 개시 15일전 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파세면제를 결정하고 이를 납기 개시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구, 동 파월장병 지원위원회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

1973년 6월 14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76 호

서울특별시 구, 동파월장병지원

위원회조례폐지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434 호 (66.5.17)

서울특별시구, 동 파월장병 지원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90 호

도시계획시장시설결정 및시장
시설위치변경과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장 시설결정 및 시장시설 위치 변경과 동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에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3. 6. 14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장 시설조서

순위	시장명	위치	면적	비고
1	중곡시장	성동구중곡동 303-1 외 3 필지	1,914 (580평)	1-3 층
2	장사세운상가	종로구 장사동 116-4	586 (208평)	
3	한흥시장	마포구공덕동 256-5 -30	4,913 (1,489평)	

나. 도시계획시장 시설 위치 변경조서

시장명	변경 전		변경 후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수송 슈퍼마켓	종로구수송동 51-4	2,800	종로구수송동 51-1	3,200
	종로구 청진동 44-2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증 산 시 책 에 대 하 여

쌀 415 만 M/T을 비롯한 식량 773 만 M/T 생산을 위한 금년도 증 산 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벼농사 150 일 작전의 전개 (5월 21일 - 10월 20 일)

제 1 단계 : 모내기 작전 (5월 21일 - 6월 30 일)

가. 모내기 2주일 앞당기기 : 중북부는 6월 25일, 남부는 6월 30일까지 완료한다.

소주밀식을 하고 헛가지치는 시기에는 거름을 안준다.

나. 보리 일찍베기 : 보리는 80% 정도 익었을때 베다.

다. 논두렁콩심기 : 모든 논두렁과 유흥지에 콩을 심는다.

제 2 단계 : 병해충 박멸작전 (6월 10일 - 9월 5일)

가. 모내기전후 : 애멸구, 끝동매미충, 이화명충

나. 본답중기 :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빛잎마름병, 이화명충

다. 본답후기 : 목도열병, 멸구

제 3 단계 : 풀베기작전 (8월 1일 - 9월 20 일)

가. 퇴비사의 신설과 개, 보수는 6월까지 완료

나. 논, 밭두렁과 지정된 산의 풀베기는 공동작업으로 실시

제 4 단계 : 피사리 작전 (9월 10일 - 9월 30 일)

가. 모내기후 1주일 이내 - 기온약을 뿌린다.

나. 본답에 남은피 - 9월중에 모두 뽑는다.

제 5단계 : 벼베기작전 (9월 25일 - 10월 20 일)

가. 중북부는 10월 15일, 남부는 10월 20일까지

나. 추수를 10일간 앞당긴다.

2. 쌀다수확 농가 십만원 시상

2 단보 이상의 논에서 단당 쌀 600키로 이상 생산한 모든 농가에 호당 10 만원을 시상한다.

1973. 6 . . .

서 울 특 별 시 장

제 2 회 간 호 보조원 자격시험 합격자명단

1973. 6. 20. 시행

수 번 호	성 명	수 번 호	성 명	수 번 호	성 명	수 번 호	성 명
1	이 순 재	26	이 정 희	51	노 철 은	81	심 채 숙
2	이 광 숙	27	김 경 숙	52	김 순 태	82	강 혜 숙
3	손 정 숙	28	서 병 일	53	이 미 란	83	홍 현 숙
4	김 수 자	29	김 태 영	55	이 경 순	84	박 정 옥
5	김 성 란	31	송 도 화	56	김 복 희	85	김 천 애
6	김 춘 선	32	석 경 회	58	이 인 후	86	김 정 희
7	오 혜 숙	33	이 수 자	60	장 영 자	87	박 혜 자
8	성 열 회	36	김 종 자	62	윤 영 숙	88	이 중 인
9	조 명 자	37	박 회 자	64	오 인 자	89	강 점 옥
11	임 승 자	38	권 순 님	65	유 선 희	90	조 부 순
12	한 삼 만	39	한 귀 득	67	양 정 숙	91	윤 정 자
13	이 향 학	40	정 해 자	68	박 봉 선	92	김 화 선
14	이 수 회	41	한 정 순	69	김 영 회	93	양 인 숙
16	이 영 복	42	정 안 순	70	김 재 순	94	김 영 식
17	차 명 숙	43	조 영 경	71	우 중 애	95	김 숙 회
19	이 정 혜	45	임 문 옥	72	홍 현 실	96	서 옥 회
20	이 수 경	46	권 영 자	73	김 미 란	98	김 선 회
21	김 현 숙	47	송 완 숙	75	장 명 숙	99	이 의 영
22	강 명 순	48	이 숙 자	76	유 옥 정	100	김 옥 자
23	박 영 실	49	김 순 효	77	윤 회 영	101	안 성 덕
24	박 선 화	50	김 순 자	79	정 옥 화	102	김 영 신

수험 번호	성 명	수험 번호	성 명	수험 번호	성 명	수험 번호	성 명
103	오 경 수	130	최 신 회	152	팽 재 숙	179	차 정 자
104	김 영 숙	131	최 영 숙	154	김 주 회	180	최 경 회
105	김 복 회	132	최 숙 자	155	윤 전 순	181	조 영 자
106	김 영 자	133	이 명 자	156	이 인 숙	182	권 정 숙
107	최 정 숙	134	송 증 자	157	윤 월 회	183	임 영 선
108	양 정 애	135	최 혜 영	158	이 건 신	185	송 순 천
109	안 경 회	136	강 해 금	159	최 향 남	186	이 상 예
110	김 위 숙	137	이 종 분	160	임 영 순	187	유 재 란
111	김 채 숙	138	조 영 회	161	강 성 구	190	장 순 자
112	김 영 아	139	최 대 임	163	김 섬 순	193	유 명 숙
114	김 순 령	140	장 순 례	164	오 명 숙	195	최 문 화
116	이 진 숙	141	임 숙 회	165	정 봉 숙	196	우 옥 남
117	김 용 숙	142	윤 정 임	167	한 계 숙	197	김 귀 숙
118	이 경 자	143	여 운 숙	168	양 연 옥	198	변 순 자
120	여 혜 자	144	이 순 영	169	심 재 봉		
121	차 봉 명	145	김 명 선	170	정 정 숙	계 164 명	
122	김 정 숙	146	이 순 자	172	조 남 숙		
123	오 증 순	147	표 경 복	173	최 형 숙		
124	박 명 숙	148	김 남 영	174	안 은 기		
127	김 정 수	149	이 경 애	175	최 현 숙		
128	손 인 숙	150	박 승 회	176	원 양 순		
129	강 성 회	151	윤 기 사	178	김 병 남		
						* 수험번호순	

사	령
---	---

◎ 1973.6.13.

원 주 시 지방행정주사 성 형 락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농 정 과 지방토목기사 송 영 섭
원에 의하여 그직을 명함.

농 정 과 농림기원보 윤 상 옥
복직을 명함.
4 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농 정 과 기한부공무원 안 기 준
(5월농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명함.

◎ 1973.6.14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 김 옥 주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송 금 순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보 강 구 옥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 장 인 덕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 이 성 희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 손 도 근
지방농림기원에 임함.

8 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이 형 근
지방보전기원에 임함(행정)

6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전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